

2025년도 제1차 대구교통공사 장애인 청년 체험형 인턴 모집 공고

대구교통공사에서 장애인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 청년 체험형 인턴을 모집하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2월 7일

대구교통공사사장

I 채용개요

1. 채용인원

| 채용인원 | 직무분야 | 주요업무 | 근무장소 |
|------|----------------------------|---|-------------------|
| 8명 | • 사무일반 • 고객센터 • 기술일반 | • 문서작성 및 관리, 데이터 수집 지원 • 고객센터 및 업무 지원 • 시설물 관리, 장비운용 지원 등 | 대구교통공사 본사 및 현업 |

※ 최종합격자 대상 희망 직무분야 조사 후 근무지 배치할 예정입니다.

2. 근로조건

가. 신분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기간제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25. 3. 12.(수) ~ 2025. 7. 21.(월)

다.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1일 8시간(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라. 보수 : 월 209만원 정도(제세공과금 공제 전 금액 기준) ※ 4대 보험 가입

마. 기타사항

- 취업을 위한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유급휴가 부여
- 우리공사 일반직 신입사원 입사 시 인턴 근무경력(호봉) 인정

3. 채용일정

| 구 분 | 일 정 | 내 용 |
|----------------|-----------------------------------|--|
| 응시원서 및 서류접수 | 2025. 2. 10.(월) ~ 2. 17.(월) 18:00 | 이메일 접수 (intern@dtro.or.kr) |
| 서류심사 | 2025. 2. 20.(목) | 응시자격 등 적격 여부 심사 |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5. 2. 21.(금) | 공사 홈페이지 공고 |
| 면접시험 | 2025. 2. 25.(화) | 서류심사 합격자 해당 ※ 세부적인 일정은 별도 통보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3. 4.(화) | 공사 홈페이지 공고 |
| 채용후보자 등록 | 2025. 3. 4.(화) ~ 3. 7.(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결과 또는 일반 채용 신체검사 적용 |

※ 상기 채용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응시자격

| 구 분 | 자 격 내 용 |
|------|---|
| 장애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응시원서 및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장애인(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 ※ 임용일(2025. 3. 12.)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 연 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 만 34세 이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 1년 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 이상 : 3세 연장 |
| 병 역 | ▶ 제한 없음 |
| 지 역 | ▶ 제한 없음 |
| 응시제한 | ▶ 공사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붙임 1> |

II

채용단계별 안내사항

1. 응시원서 및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2. 10.(월) ~ 2. 17.(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intern@dtro.or.kr)

다. 작성방법 : 응시원서 양식(첨부)에 맞춰 작성

※ 응시원서 기재사항은 접수기간 내에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2025. 2. 17.)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PDF 파일 형태로 제출하되, 여러 개의 파일을 첨부할 경우

하나의 파일 또는 Zip파일로 압축하여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 구 분 | 제 출 사 항 | 비 고 |
|---------------|---|------------------|
| 필 수 제출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장애인 증명서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
| 해 당 자 제출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적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다문화가족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 |

※ 주민등록번호 기재된 서류의 경우 뒷자리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

2. 서류심사

가. 일 정

| 서류심사 일자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
| 2025. 2. 20.(목) | 2025. 2. 21.(금) |

나. 심사내용 : 응시자격 등 적격 여부 확인

※ 공고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 전원 서류심사 합격

다. 불합격대상

- 응시원서 및 서류접수 기한까지 서류 미제출자
- 응시원서 기재사항과 다르거나 제출서류로 증빙이 안되는 경우
- 응시원서에 가점내역을 제출서류보다 높게 기재한 경우

3. 면접시험

가. 대 상 자 : 서류심사 합격자

나. 시험일정 : 2025. 2. 25.(화) ※ 개인별 면접시험 시간은 별도 공지

다. 시험장소 : 대구교통공사 교육원(대구시 달서구 월배로 5길 39, 월배차량기지사업소 내)

라. 평가요소 : ①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마. 채점방법

- 면접위원별 평가요소마다 상(3), 중(2), 하(1)로 채점(위원별 15점 만점)
- 전체 면접위원 점수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경우 면접시험 합격 처리
단, 어느 한 요소에 대하여 면접위원 과반수(3명 이상)가 '하'로 채점한 경우 불합격 처리

바.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사항

| 가 점 대 상 자 | 가점비율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가점비율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로 확인 | 면접시험 만점의 5~10% |

- 가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사지원서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의 가점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표기된 가점을 적용하며, 가점 대상자의 합격률은 30% 이내로 제한합니다.
- 그 외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4. 최종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25. 3. 4.(화)

나.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시험 점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적약자 → 면접시험 평가요소(①~⑤)순서에 따른 점수
상위자 우선순위로 선정

※ 사회적 약자 :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다. 예비합격자 제도운영

-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시험성적순에 따라 추가합격자 결정
- 예비합격자 규모 : 면접시험 합격자 전원
-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운영

라.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 구 분 | 피해자 구제 사항 |
|------------|---|
| 피해자 특정 가능시 | ▶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는 즉시 채용 ▶ 서류전형 피해자는 차기 채용시 서류전형 면제 |
| 피해자 특정 불가시 | ▶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 그룹에 대하여 면접 재실시 ▶ 서류전형 피해자 그룹에 대해서 서류전형 재실시 |

5. 신체검사

가. 검사기준 : ① 번과 ② 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채용후보자로 등록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결과(대상연도 2024년 또는 2025년) 정상 판정 시
- ② 일반 채용 신체검사 결과 의사 소견상 업무수행 가능, 정상, 특이소견 없음, 양호 등 판정 시

나. 기타사항 : 신체검사비용은 공사에서 부담(합격자 선결제 후 공사 지급)

III

기타 유의사항

1.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재, 허위기재, 착오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특히 시험과 관련되는 취업지원 관련 사항에 대한 오기재, 허위기재, 착오기재 시에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합격이 취소되니 확인 후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최종합격자 중에서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임용 결격사유 등이 발견된 때에는 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고 예비후보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합니다.
3. 응시자 중 면접시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장애유형에 따른 편의지원을 2. 17.(금) 18:00까지 유선으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4. 원서접수 결과 지원자가 채용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시험일정 등 모집공고 내용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청구자에 한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우리 공사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 및 비위채용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배제하고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5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합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교통공사 인사팀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053-640-2176)

< 붙임자료 >

1. 공사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2. 채용서류의 반환에 관한 공지

응시 결격사유

【공사 인사규정 제12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삭제
11. 삭제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4. 비위채용자로 적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채용서류의 반환에 관한 공지

1. 이 공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서, 임용되지 않은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용되지 않은 지원자는 임용 여부 확정일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의 기간 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공사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를 작성하여 팩스(053-640-2206) 제출 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는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임용자 발표일부터 18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대구교통공사사장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접수번호 |
| 주 소 | |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 반환청구 서류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구교통공사 사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